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61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이주영 · 이준석 · 천하람
최수진 · 황명선 · 채현일
유용원 · 김대식 · 윤재옥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는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관리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 관리는 전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음.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와 신상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이 관리하도록 한 것은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신상정보를 경찰청장이 아닌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가명처리를 한 후 검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

을 방지하는 동시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전문기관의 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유전자검사의 동의”를 “유전자검사의 동의, 가명처리”로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검사의 비식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련번호

부여 및 가명처리를 하고 경찰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부여한 일련번호는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
른 일련번호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u>전문기관의 장</u> 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u>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경우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를 한 후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u>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u>유전자검사의 동의</u>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 ----- <u>경찰청장</u> ----- ----- -----.
	⑦ ----- <u>제6항</u> ----- ----- ----- ----- <u>유전자검사의 동의, 가명처리</u> ----- ----- -----.